

강원도립대학교 사회봉사센터 운영 규정

(제정) 2013-12-09 규정 제343호
(개정) 2015-11-13 규정 제374호
(개정) 2016-02-18 규정 제388호
(개정) 2016-04-25 규정 제397호
(개정) 2017-03-22 규정 제45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가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활성화하고 사회봉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4.25>

제2조(사업) 사회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교직원과 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사회봉사(개인, 단체) 활동 지원
2. 사회봉사 활동 계획 수립과 조정
3.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4. 교외 봉사기관 연계 지원
5. 기타 사회봉사 활동과 연계된 사업

제3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1인을 두며, 필요 시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2015.11.13>

②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15.11.13>

제4조(운영위원회 등) ①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총괄하며, 센터 운영 자문을 위해 사회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2015.11.13>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봉사 활동 계획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학처장, 사무국장, 학생생활관장, 학생상담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직원 2명, 재학생 1명으로 한다. <개정2016.2.18.> <개정2016.4.25.> <개정2017.3.2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추천 절차에 따라 센터장이 위촉한다.

1. 직원 : 대학의 직원 중에서 직원단체(직원회, 조교협의회 등)에서 추천한다.
2. 학생 : 대학의 재학생 중에서 강원도립대학교 학생회에서 추천한다. <개정2015.11.13.> <개정2017.3.22.>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신설2017.3.22.>

⑥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2017.3.22.>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2017.3.22.>

⑧ 센터 운영을 위한 직원은 행정부서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7.3.22.>

제5조(사회봉사단 구성·운영) 사회봉사단 구성·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봉사단은 교직원과 학생으로 구성한다.
2. 사회봉사단의 활동 지역은 국내에 한한다.
3. 사회봉사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사회봉사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평가) ① 센터장은 센터와 사회봉사단 활동 상황을 연 1회 평가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2015.11.13>

② 평가 결과는 다음 해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여 환류되도록 한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2013. 12.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